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6. 8. .

발 의 자 : 의원

찬 성 자 : 인

제안이유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머무름. 또한 빈발하는 공직자의 부패·비리사건으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음.

이에 지난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가 마련됐지만,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 수행금지 등 이해충돌방지 근거를 마련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환경을 보장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안 제11조의2)
- 나.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안 제11조의3)
- 다. 공직자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안 제11조의4)
- 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안 제11조의 5)
- 마. 소속 공공기관 등에 가족 채용 제한(안 제11조의6)

법률 제 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등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으로 한다.

제1조 중 “수수를”을 “수수 및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로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차관급 이상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다.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라.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칙

4.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제4호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4장 및 제5장을 각각 제5장 및 제6장으로 하고, 제4장(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공직자등의 이해충돌 방지

제11조의2(공직자등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에서 제척(除斥)된다.

1. 직무관련자가 공직자등 자신인 경우
2. 직무관련자가 공직자등의 4촌 이내 친족인 경우
3. 공직자등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다만, 공직자등의 가족이 수행하는 업무 또는 직위 등에 비추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공직자등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역할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다만, 공직자등의 가족이 수행하는 업무 또는 직위 등에 비추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직무관련자가 공직자등 또는 그의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인 경우

6. 그 밖에 공직자등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공직자등은 자신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에 해당하거나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등에게 제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그 처리 결과를 기피 또는 회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⑥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피·회피의 신청 방법,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현황의 기록·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 ①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취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취임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소속기관장(공공기관의 장이 업무활동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활동 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2. 대리·고문·자문·상담 등의 내용
 3.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4.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활동 명세서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④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취임하기 전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 또는 대리·고문·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해당 직위에 임용되거나 취임한 날부터 2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1.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정보조를 제공하는 직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관계되는 직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관계되는 직무
 5.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6. 법령에 근거하여 감독하는 직무
 7.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직무
 8.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⑤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이 정보공개를 금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활동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⑥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기피, 회피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직자등”은 “고위공직자”로 본다.

제11조의4(공직자등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제10조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대가로 사례금을 받는 행위는 제외한다.
 2.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직무에 관하여 상대방인 법인 또는 단체를 대리하거나 조언·자문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공직자등의 직무와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5. 공직자가 직무권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 또는 영리행위를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행위
-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 외에도 공직자등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외부활동을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직자등에게 명령하여야 한다.

제11조의5(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직자등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동산 등의 재산상 거래를 하는 행위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해당 공직자등에게 제7조제7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의6(가족 채용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나 그 산하기관(공공기관의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제2조제1항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 절차에 따른 채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의 인사업무 담당자(인사업무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자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자신의 가족이 그 공공기관에 채용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공기관의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이하 “산하기관 담당자”라 한다)은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7(소속 공공기관 등과의 계약체결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나 그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 조달을 위한 계약(공개경쟁 절차에 의한 계약은 제외한다. 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그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의 계약업무 담당자는 소속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가족이 그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 담당자는 소속 공공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

결해서는 아니 되며,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8(예산의 부정사용 금지) 공직자등은 예산(기금·부담금·수익금 등을 포함한다)을 집행·사용·관리할 때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9(공공기관의 물품과 직위 등의 사적사용 금지) ① 공직자등은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공공기관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및 다른 공직자등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속 공공기관의 명칭 또는 직위 등을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령이나 사회상규 등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10(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제4장의 제목 중 “부정청탁 등”을 “부정청탁 및 공직자등의 이해충돌”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제한 등”을 “제한 및 공직자등의 이해충돌 방지 등”

으로 한다.

제16조 중 “제6조 및 제8조를”을 “제6조, 제8조 및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8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17조 중 “제8조를”을 “제8조, 제11조의7 및 제11조의8을”로 한다.

제18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2조에 따른 공직자등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제척·기피·회피의 처리에 관한 업무
4. 제11조의3에 따른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서 보관·관리 및 제척·기피·회피의 처리에 관한 업무
5. 제11조의5에 따른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

제19조제1항 중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를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 등”으로 한다.

제20조제1호 중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를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 등”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및 2호 본문 중 “제11조”를 “제11조의1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1조에”를 “제11조의10에”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제11조”를 각각 “제11조의1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본문·제2호 본문 및 제3호 중 “제11조”를 각각 “제11조의10”으로 한다.

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제11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3. 제11조의3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고위공직자
 4. 제11조의6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이 소속 공공기관 등에 채용되도록 지시·유도·조정하거나 채용되는 것을 묵인한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담당자 또는 산하기관 담당자
 5. 제11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공공기관이나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고위공직자 또는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그 공공기관이나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조정하거나 그 수의계약 체결을 묵인한 고위공직자
 6. 제11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계약업무 담당자 또는 가족이 그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조정하거나 그 수의계약 체결을 묵인한 계약업무 담당자
 7. 제11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소속 공공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산하기관 담당자 또는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조정하거나 그 수의계약 체결을 묵인한 산하기관 담당자
 8. 제11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한 공직자등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제11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2.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활동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고위공직자
3. 제1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공직자등
4. 제11조의5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특수관계 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유도·조정하거나 그 행위를 묵인한 공직자등
5. 제11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공직자등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은 공직자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제11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2. 제11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소속 공공기관의 명칭 또는 직위 등을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공직자등

제24조 본문 중 “제11조”를 각각 “제11조의10”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u></p> <p>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u>수수</u>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u><신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등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u></p> <p>제1조(목적) ----- ----- ----- <u>수수 및 직무수행과</u> <u>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u> ---- ----- -----.</p> <p>제2조(정의)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u></p> <p style="padding-left: 20px;"><u>가. 차관급 이상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u></p> <p style="padding-left: 20px;"><u>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u></p> <p style="padding-left: 20px;"><u>다.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u></p>

<신 설>

3. 4. (생 략)

제4조(공직자등의 의무) ①·②
(생 략)

<신 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② (생 략)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

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
기관의 장

라.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
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칙

4.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
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
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
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5. 6.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제4조(공직자등의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
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
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
하여야 한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 8. (생략)

④·⑤ (생략)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

-----.

1. ~ 3. (현행과 같음)

4. -----

말한다. 이하 같다-----

5. ~ 8.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삭 제>

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 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신 설>

<신 설>

제4장 공직자등의 이해충돌 방
지

제11조의2(공직자등의 사적 이해
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 ① 공
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
당 직무에서 제척(除斥)된다.

1. 직무관련자가 공직자등 자신
인 경우
2. 직무관련자가 공직자등의 4
촌 이내 친족인 경우
3. 공직자등 자신 또는 그 가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법인 또는 단
체의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
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다
만, 공직자등의 가족이 수행
하는 업무 또는 직위 등에
비추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4. 공직자등 자신 또는 그 가족
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역할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다만, 공직자등의 가족이 수행하는 업무 또는 직위 등에 비추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직무관련자가 공직자등 또는 그의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인 경우

6. 그 밖에 공직자등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공직자등은 자신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등에게 제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그 처리 결과를 기피 또는 회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⑥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척·

<신 설>

기피·회피의 현황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피·회피의 신청 방법,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현황의 기록·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고위공직자의 사적 이

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 ①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 되거나 취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취임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소속기관장(공공기관의 장이 업무활동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이해 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활동 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2. 대리·고문·자문·상담 등의

내용

3.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4.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
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활동 명세서를 보
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
용되거나 취임하기 전 3년 이
내에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
체 또는 대리·고문·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해당 직위에 임용되
거나 취임한 날부터 2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
니 된다.

1.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
를 제공하는 직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
에 관계되는 직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

한 검사·감사에 관계되는 직
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관
계되는 직무

5.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
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6. 법령에 근거하여 감독하는
직무

7.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직무

8.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
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⑤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이
정보공개를 금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활동 내
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⑥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
계 직무의 수행 기피, 회피 등
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직자등”은 “고위공
직자”로 본다.

제11조의4(공직자등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 ① 공직자등은

<신 설>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제10조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대가로 사례금을 받는 행위는 제외한다.

2.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직무에 관하여 상대방인 법인 또는 단체를 대리하거나 조언·자문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공직자등의 직무와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신 설>

5. 공직자가 직무권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 또는 영리행위를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행위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 외에도 공직자등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외부활동을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직자등에게 명령하여야 한다.

제11조의5(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직자등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동산 등의 재산상 거래를 하는 행위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해당 공직자등에게 제7조제7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의6(가족 채용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나 그 산하기관(공공기관의 소속

<신 설>

기관과 공공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제2조제1항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 절차에 따른 채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의 인사업무 담당자(인사업무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자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자신의 가족이 그 공공기관에 채용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공기관의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등(이하 “산하기관 담당자”라 한다)는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1조의7(소속 공공기관 등과의 계약체결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나 그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 조달

을 위한 계약(공개경쟁 절차에 의한 계약은 제외한다. 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그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의 계약업무 담당자는 소속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가족이 그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 담당자는 소속 공공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8(예산의 부정사용 금지)

공직자들은 예산(기금·부담금·수익금 등을 포함한다)을 집행·사용·관리할 때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9(공공기관의 물품과 직

<신 설>

<신 설>

위 등의 사적사용 금지) ① 공
직자등은 공공기관이 소유하거
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
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타인
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해
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공공기관과 근
로계약 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및 다른 공직자등으로부
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아서
는 아니 된다.

③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 범
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
여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
로 소속 공공기관의 명칭 또는
직위 등을 이용하거나 타인으
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아
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정은 다른 법령이나 사회상규
등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10(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신 설>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

2.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3.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
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
무를 관장한다.

1.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
의 수수 금지·제한 등에 관
한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계
획의 수립 및 시행
2. ~ 5. (생략)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
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
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
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
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
는 법인·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제5장 부정청탁 및 공직자등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

-----.

1. -----
-----제한 및 공직자
등의 이해충돌 방지 등-----

2. ~ 5. (현행과 같음)

제16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 등이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제5조, 제6조 및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부당이득의 환수) 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 제6조, 제8조를 위반하여 수행한 공직자등의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등은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

-----제6조, 제8조
및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8까지의 규정을-----

제17조(부당이득의 환수) -----
-----제8조,
제11조의7 및 제11조의8을-----

제18조(비밀누설 금지) -----

1. 2.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19조(교육과 홍보)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②·③ (생략)

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1. 2. (현행과 같음)

3. 제12조에 따른 공직자등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제척·기피·회피의 처리에 관한 업무

4. 제11조의3에 따른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서 보관·관리 및 제척·기피·회피의 처리에 관한 업무

5. 제11조의5에 따른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

제19조(교육과 홍보) ① -----

-----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 등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

-----.

1. -----금지, 금품등의 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2.·3. (생략)

제5장 징계 및 벌칙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 5.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

수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 등

2.·3. (현행과 같음)

제6장 징계 및 벌칙

제22조(벌칙) ① -----

-----.

1. -----
---제11조의10-----

--. -----

-----.

2. ~ 5. (현행과 같음)

② -----

-----.

1. -----

-----제11조의10에-----

을 포함한다)

2. 3. (생략)

③·④ (생략)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신설>

<신설>

2.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

-----.

1. -----

제11조의10-----

제11조의10-----

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제11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

3. 제11조의3제4항 본문을 위반

<신 설>

<신 설>

<신 설>

하여 직무를 수행한 고위공
직자

4. 제11조의6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가
족이 소속 공공기관 등에 채
용되도록 지시·유도·조정하거
나 채용되는 것을 묵인한 고
위공직자, 인사업무 담당자
또는 산하기관 담당자

5. 제11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공공기관이나 그 산하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고위공직자 또는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그 공공기
관이나 그 산하기관과 수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
도·조정하거나 그 수의계약
체결을 묵인한 고위공직자

6. 제11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계약업무 담당자 또
는 가족이 그 공공기관과 수
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
유도·조정하거나 그 수의계
약 체결을 묵인한 계약업무
담당자

<신 설>

<신 설>

2. (생 략)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

7. 제11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소속 공공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산하기관 담당자 또는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조정하거나 그 수의계약 체결을 묵인한 산하기관 담당자

8. 제11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한 공직자등

9.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제11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

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③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

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2.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활동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고위공직자

3. 제1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공직자등

4. 제11조의5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유도·조정하거나 그 행위를 묵인한 공직자등

5. 제11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공직자등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은 공직자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제11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2. 제11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소속 공공기관의 명칭 또는 직위 등을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공직자등

④ (현행과 같음)

⑤ -----

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⑥·⑦ (생략)

제2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1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또는 제23조제5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

-----.

3. -----

----- 제11조
의10 -----

⑥·⑦ (현행과 같음)

제24조(양벌규정) -----

----- 제11조의10 -----

----- 제11

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
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
우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
를 과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
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
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
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
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조의10-----

